

#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3180
----------	------

발의연월일 : 2025년 10월 일

발 의 자 : 오 승 철 의원

##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덧붙임

## 1. 제안이유

가.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에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에 중점을 두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보다 포괄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마련됨.

나.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장, 사업자, 시민 모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 부담을 줄여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마. 사업자의 책무(안 제6조)

바. 시민의 책무(안 제7조)

사.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修理)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분·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5. 10. .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07-18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2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7-11	환경국 자원순환과	
3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5-23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4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5-02	기후환경위생국 자원순환과	
5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3-10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6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2-27	환경국 자원순환과	
7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11-22	환경자원국 자원순환과	
8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04-08	안전환경교통국 자원관리과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3-12-29	자원순환과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7-17	청년문화국 청소년행정과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7-09	스마트환경생활국 청소년행정과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3-06	스마트환경국 청소년행정과	
13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03-31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12-31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15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12-06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